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60조(정의) ① 본절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 제164조(세율) ①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구 분	인구 50만이상시 및 자치구 아년구가 설치된 시	기 타 시	군
제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4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5종	12,000원	5,000원	3,000원

-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제248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사업소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 제1조의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등)

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94.12.31. 신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5. 9. 4.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8.2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5.8.22.

다. 상정일자 : 제33회임시회 제6차위원회('95. 9.4)상정, 질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재형 건설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도로법시행령(1994.9.16. 대통령령 제14382호)개정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 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마포구 행정권한위임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점용허가 등의 동장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을 삭제하며, 일부 점용료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함(안 제6조 및 제8조제1항)
- (2) 도로점용허가신청수수료를 “자치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를 “자치구 수입으로 한다”로 조항 변경(안 제8조제3항)
- (3) 동장에 대한 점용허가등 권한위임 규정 삭제(안 제9조)
- (4) 별표1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 내용 일부 개정(안 별표1)

가) 진입로 점용료율 변경 : 0.02→0.025

나) 공사용 시설물에 지하 에스앙카 (요율 0.02)를 규정

다) 비고란 6의2를 신설 : 관로를 병행·중첩하여 설치한 경우 관다발의 외접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의 직경을 적용하여 점용료 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 조례안은 '94.9.16 개정된 도로법시행령과 '95.6.10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일부 점용료율을 조정하고 마포구청권한위임조례에 중복규정된 동장에게 위임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 별표1 제4호에서 보도상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진입로 점용료율을 시행령에 규정된대로 0.02에서 0.025로 상향 조정하고 그 동안 적용규정이 없던 대형 공사장 등에서 지하를 깊이 굴착한 후 굴토부분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에스앙카의 점용료율을 면적 1㎡당×공시자가×0.02의 요율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신설하므로 점용료 산정에 혼선을 방지하고 세수증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으며

○ 동조례안 비고란에 6의2를 신설하는 것은 별표1의 제2호 전기, 통신 관로 등의 점용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1개의 관을 개별적으로 정액징수하던 것을 관로를 병행 중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체관을 묶어 그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

적의 원 직경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종전 규정에 비하여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 안제9조가 삭제된 것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권한위임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으로 동조례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 끝으로 동조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난해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며 추후 이에 대한 정비·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김평전위원) : 공공용지를 여러 사람이 점용하고 있을 때 점용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말하여 주십시오?

○ 답변요지(건설관리과장 이재형) : 점용료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데 기준이 어려울 경우는 주점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질의요지(박상수위원) : 가게 등이 좌판 및 물건적치로 도로를 점용하고 점용료를 납부함을 구실로 도로를 더 많이 점용하여 주민통행 및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답변요지(건설관리과장 이재형) :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좌판설치나 물건적치를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며, 교통소통이나 주민불편에는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합니다.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인도를 지나 불가피하게 주차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이 상가와 주택의 구분이 없이 일률적으로 0.025로 상향조정됨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는바 시행시 검토와 보완이 요청됨.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
-------	----

제출년월일 : 1995. 8. 21.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법시행령(1994.9.16. 대통령령 제 14382호)개정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

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마포구행정권한위임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점용허가 등의 동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을 삭제하며, 일부 점용료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함.(안제6조 및 제8조제1항)
- 나. 도로점용허가신청수수료를 “자치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를 “자치구 수입으로 한다”로 조항 변경(안 제8조제3항)
- 다. 동장에 대한 점용허가등 권한위임규정 삭제(안 제9조)
- 라. 별표1의 점용료산정기준표내용 일부 개정(안 별표1)
  - (1) 진입로 점용료율 변경 : 0.02→0.025
  - (2) 공사용시설물에 지하 에스카(요율 0.02)를 규정
  - (3) 비고난 6의2를 신설 : 관로를 병행·중첩하여 설치한 경우 관다발의 외접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의직경을 적용하여 점용료 산정.

3. 개정근거

- 가. 도로법(1995.1.5. 법률 4920호) 제40조, 제43조, 제77조의2
- 나. 도로법시행령(1994.9.16. 대통령령 제14382호) 제24조, 제26조의2
- 다. 도로법시행규칙(1994.12.7. 건설교통부령 제572호) 제33조
- 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5.6.10

조례 제3209호) 제6조, 제8조, 제9조,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5. 예산조치의 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3호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구청장이 정하는”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으로 하며, 동조 제3항제1호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를 “수입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과태로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1. 전주·공중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 주		1개	1,350
	전주와 유사한 것			2,000
	공중전화			54,200
2.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	직경 0.1m 이하	점용면적 1㎡	850
		직경 0.1m 초과		1,750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금액단위: 원)

접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접 용 료	
			접용단위	기간 단위		
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0.2m 이하	길이 1m	1년	3,50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직경 1.0m 초과				
		17,500				
기타의 관	기타의 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년	1,300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2,60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5,2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7,85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10,45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13,100	
		직경 1.0m 초과			26,20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실안내표지·현수막·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일시 설치한 것(1월미만접용)	표시면적 1㎡	1일	300	
		기 타			1년	88,400
	사 실 안 내 표 지		1개	1년	73,6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300	
					광고또는 홍보용	300
					기타의 용도	300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176,800	
기 타		88,4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접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금액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유사한 시설				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진 축 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건축물			토지가격에 0.075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육교상가,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굴착부분·어스양카·기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30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주백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하고, 이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의 1평방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길이·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합계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부과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45원→1,400원, 1,995원→1,950원)
6. 위표의 제1호에는 수도·하수도·전기·통신·가스·송유·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관 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 6의2.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위표의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위표의 제6호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전주·전주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이외의 점용물
  - 나. 제4호·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 다.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이외의 점용물
  - 라.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점용한 것” 이외의 점용물
  - 마.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의 점용물
9. 위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0. 위표의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는 점용료 산정총액이 연간 700,000원을 초과할 때는 700,000원으로 한다.
11. 위표중 전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자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u>건설부령</u> 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1. .... ..... <u>건설교통부령</u> .....	2.	.....	..... <u>건설교통부령</u> .....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u>건설부령</u> 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 ..... <u>건설교통부령</u> .....	3.	(현행과 같음)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3. ....	.....

현행	개정안
<p>건설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p>	<p>…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1. 공사용 시설은 <u>건설부 표준품셈</u>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p>	<p>1. ……………<u>건설교통부</u> ……………</p>
<p>2.~3. (생략)</p>	<p>2.~3. (현행과 같음)</p>
<p>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u>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u>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u>건설교통부령</u>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한다.) 수입증지로 징수한다.</p>	<p>③ …………… 수입으로 한다.</p>
<p>제9조(권한의 위임)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일시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시 또는 구 관할구역내의 국도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국도를 포함한다)은 동장에게 위임한다.</p>	<p>(삭 제)</p>

94 동관내도제작설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의안 번호	20	제안일자 95. 9. 2. 제안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	----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9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동의 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조사기간은 95.9.2부터 95.9.23까지 22일간으로 한다.
  - 조사대상은 마포구청과 해당 제작업자로 한다.
  - 조사받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한다.
  - 조사장소는 마포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

위원회실로 한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

조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94서울특별시 마포구 각동의 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조사기간

1995.9.2.(토) ————— 1995.9.23.(토) [22일간]